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A1425)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도이치자산운용(주) (02-724-4300)

4.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성기준일

2013.09.03.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09.06.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DWS 독일 주식 펀드 (DWS Deutschland)”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가격 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증권투자신탁으로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또한,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위험을 일정부분 헛지(Hedge)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방침입니다. 본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CDAX 95% + 콜금리 5%

이 집합투자기구는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만큼,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비교지수인 CDAX 가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의 비교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CDAX: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rse)에서 제공하는 독일내 주식 전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2)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의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이상이지만,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 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해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해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해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해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 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

***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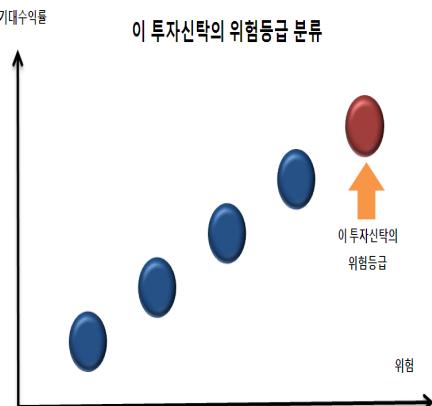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은 개별 국내 및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해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환해지를 실행할 경우의 주된 해지 전략-</p> <p>가. 달러화, 유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해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이상이지만,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 해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해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해지방법, 해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해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p>2) 해지 수단 및 비용</p> <p>주된 해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해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p> <p>3) 기타 환해지 관련 주의 사항</p> <p>환해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해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p>

	<p>해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p>※ 상기 해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독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관련 주가 상승시의 자본 수익을 추구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13.06.23 현재]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정원	1974	부장	18 개	3,130 억좌	- 도이치자산운용 (2005.06~)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6.24 ~13.06.23	11.06.24 ~12.06.23	11.05.27 ~11.06.23		
펀드	30.06	-7.40			
비교지수	27.32	-10.59			
종류 A	28.50	-8.61			
종류 C1					
종류 C-e	28.51	-8.63			

주 1) 비교지수: CDAX 95% + 콜금리 5%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II. 매입·환매 및 전환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주 2)	납입금액의 1.00% 이내	–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징구	–
C-I		–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징구	–
C-e		–	–		–
C-w		–	–		–
C1		–	–		–
C2		–	–		–
C3		–	–		–
C4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 2) 종류별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 A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
2. 종류 C1 수익증권: 제한없음
3.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4.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5.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6. 종류 C-I 수익증권: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7.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8.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주 3)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단,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빈번한 환매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류형 A의 경우 30일미만 환매를 고려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이익금의 10%가, 종류형 C1, C2, C3, C4, C-I, C-e 및 C-W의 경우 90일미만 환매를 고려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	증권 거래비용
A	0.300	0.900	0.040	0.020	0.0001	1.260	1.260	-
C-I	0.300	0.030	0.040	0.020	-	0.390	1.190	-
C-e	0.300	0.920	0.040	0.020	-	1.280	1.280	-
C-w	0.300	-	0.040	0.020	-	0.360	1.160	-
C1	0.300	1.500	0.040	0.020	-	1.860	1.860	-
C2	0.300	1.250	0.040	0.020	-	1.610	2.410	-
C3	0.300	0.990	0.040	0.020	-	1.350	2.150	-
C4	0.300	0.950	0.040	0.020	-	1.310	2.110	-
지급시 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5.27 ~ 2013.05.26]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 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5.27 ~ 2013.05.26]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80%(집합투자업자보수(연0.6%),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및 기타비용 포함)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수익증권 설정 후 발생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종류C-I 의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종류형 A	291	746	1,247	2,736
종류형 C1	273	775	1,288	2,813
종류형 C2	122	385	674	1,534
종류형 C-e	213	672	1,178	2,682
종류형 C-W	119	375	657	1,496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됨을 가정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2. 과세

가. 투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나.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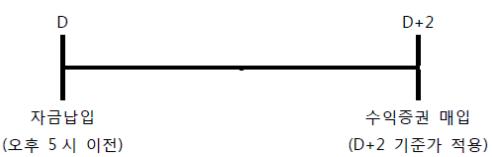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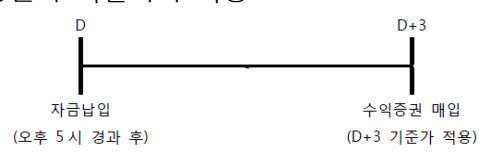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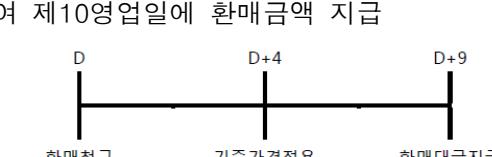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및 전환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 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나. 매입·환매 절차

매입	환매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전환 절차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3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종류 C1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1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입 또는 전환된 시기를 불문하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4

III.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2012.05.27 – 2013.05.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 기(2011.05.27 – 2012.05.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3.05.26)	(2012.05.26)
운용자산	217,121,877	140,906,903
증권	188,574,175	115,693,872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28,547,702	25,213,031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135,929	15,017,133
자산총계	217,257,806	155,924,036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12,929,748	30,791,831

부채총계	12,929,748	30,791,831
원본	166,936,504	137,713,827
수익조정금	22,823,999	-9,951,705
이익잉여금	14,567,555	-2,629,917
자본총계	204,328,058	125,132,205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2.05.27 – 2013.05.26)	(2011.05.27 – 2012.05.26)
운용수익	31,038,533	-646,119
이자수익	238,396	387,044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차익(손)	30,800,137	-1,033,163
기타수익	3,734	0
운용비용	1,211,656	1,946,304
관련회사 보수	1,211,656	1,946,304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21,664	37,494
당기순이익	29,808,947	-2,629,917
매매회전율	0.00	0.00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게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 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